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95
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12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^{**}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**행정자치부령**으로
지정된 보행자 범위를 기준하는 기관을 **행정안전부령**으로 개정

※ 「정부조직법」 개정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일부개정]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2조의 “보행자”의 범위를 지정하는 기관을 기존의 “**행정자치부 부령**”에서 “**행정안전부 부령**”으로 개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 참조
 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)
 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자연재해대책법

-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 ①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건축물관리자”라 한다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(步道)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>
-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□ 보행안전법 시행규칙

- 제2조(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보행보조용 의자차”란 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.>